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1. 16.(수) 14:36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6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5차부터 제5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기타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관련 의견청취’는 공개 시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2-58-19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이후에 서면평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지난 9월 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4>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21년 1월~12월까지 전년도 1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는 이동전화 등 12개 분야 42개 사업자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평가기준과 배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등 총 5개 분야 총 9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상세한 평가기준과 배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방법입니다. 우선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고객센터 최고책임자 면담 등을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 실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입니다. 평가점수는 평가 대상 42개 전기통신사업자 전체 평균이 879.9점으로 전년도인 856.5점보다 23.4점 상승하였습니다.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등급의 경우 전년도는 해당 사업자가 전무했으나 올해는 7개사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 각 9개사, 양호 6개사, 보통 2개사, 미흡 3개사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서비스의 확대, 고객센터 최고책임자의 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해와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과 해결 노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사업자 등의 평가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별 평가결과는 상세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특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분야별 주요 평가결과입니다.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5G 가입·이용·해지 시 이용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가입상품의 최저 속도 및 정기적인 속도 측정 안내 관련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폰의 경우 전년 대비 고객센터 최고책임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이 향상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자와 신규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앱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급 상승하고, 구글과 윈스토어는 각각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애플은 제출 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이후 5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SNS 분야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OTT·개인방송은 시범평가인 넷플릭스가 1등급 상승하였지만 유튜브는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 보호가 미흡해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배달 분야는 전년 대비 모든 사업자가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평가기간임에도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1등급 상승을 보였습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최초 시범평가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평가 관련 컨설팅을 통해 이용자 업무 보호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고거래 분야의 당근마켓은 최초 시범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는 등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3) 기타 사항입니다. 시범평가 관련해서는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서비스 평가 결과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평가제도의 이해 부족과 자료 미비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고객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일부 해외사업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의 안내가 미흡하고, ARS 서비스 운영 및 관련 자료 미제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통신장애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2018년부터 평가항목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모의훈련을 통해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등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사의 보안정책 등의 이유로 평가자료 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 전년 평가결과 대비 개선된 사항입니다. 자가진단 제도를 도입해서 대상사업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알뜰폰이나 부가통신사업자 등 이용규모와 민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평가기준 개선은 기간·부가통신 분야별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개선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평가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시의성 제고를 위해 평가일정을 일부 앞당기는 등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 사업자별 우수사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 평가위원회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관련해서 기간통신 분야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중 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가통신은

비대면 서비스의 가속화로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업자 내부의 인식 변화는 정체되고 정책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평가업무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 서비스와 이용자 규모 또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와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평가대상 확대입니다. 신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와 이용자 규모 및 서비스 장애 빈도, 민원 등의 증가에 따라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MAP(모빌리티)나 카카오쇼핑 등 이용자가 급증하거나 서비스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2년 연속 시범평가 대상 사업자는 내년 평가 시 본평가로 전환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 개선입니다. 기간과 부가통신 사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로서 신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한 규모 있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평가기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용자보호 자율규제 체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활용입니다. 평가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과징금 부과 시 우수사업자에 대한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타 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에 반영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노력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위원 의견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등을 사업자별로 통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자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평가를 앞당겨 달라고 해서 두 달쯤 앞당긴 것입니까?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 42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했습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알뜰폰사업자의 평가등급이 대부분 전년 대비해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법규 준수, 최고책임자의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애플 앱스토어, Meta와 같은 해외사업자는 평가에 비협조적일 뿐더러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해당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네이버는 우수, 다음과 카카오톡은 보통입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할 때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분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배점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관리체계의 적합성 분야가 50점일 뿐입니다.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이용자 보호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향후 서비스 장애, 이용자 정보 유출, 해킹, 바이러스 등 안전 전반에 관해서 이용자 보호 평가 체계를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속적인 평가는 이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의 개선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어 왔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지 않게 보호업무 평가결과 개선에 미온적인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이 나왔지만 지난달 대규모 통신장애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의 경우는 2019년도에 카카오가 딱 한번 양호 등급을 받은 이래 보통 이하에 머물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보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평가기준에 통신장애 관련 사항 등 이용자 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추후에 더 큰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거나 혹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특히 보통 등급 이하 반복되는 등 보통 등급을 받는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원인 분석과 현실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가 시의성 있게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대체로 향상됐는데 반면에 넷플릭스를 제외한 유튜브, 구글, 애플 등 글로벌사업자가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애플이 5년 연속 미흡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분야 중 초고속인터넷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검색·SNS는 낮은 평가를 받아서 이용자가 많은 포털이나 앱마켓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과 이용자 권익 증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서 보듯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장애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용 약관에 대한 가독성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피해 보상 절차 및 기준 유무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불편에 빠르게 대응하고 장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동일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19일간 접수된 피해사례가 1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사례는 홍보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미흡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과 이용자 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평가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조사·검토하고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사무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평가가 향상된 반면에 부가통신사업자 및 글로벌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평가가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는 최근 발생한 서비스 중단 상태를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느낀 것처럼 이제는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위상을 가지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용자 보호업무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평가를 받은 사업자분들께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일어났던 데이터센터 사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고 있는지는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가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가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하는 데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사업계획 등 변경에 관한 건 (2022-58-20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사업계획 등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엠앤씨가 2020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계획 중 ‘방송광고 매출배분 및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을 [별지1]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0년 SBS M&C에 대해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조건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경과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SBS M&C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주요내용입니다. SBS와 지역민방 간 변경 사항입니다. 재허가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광고매출 배분기준을 프로그램·시보·가상광고에 대해 지역별·시급별로 구분하여 초당 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역민방 광고매출 비율의 각사 최소 92% 보장, 지역민방 전체 97% 미달 시 재협의 가능한 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역민방 권역별 인구 및 경제지수를 반영하지 못했던 종전 전파료 배분 방식과 로컬광고 판매 감소에 따라 최소보장 매출금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된 내용입니다. SBS 수중계 프로그램의 광고매출 배분기준 전파료는 SBS 전국네트워크 매출에 연동되는 매출배분산식을 적용하여 9개 지역민방에 총 14.97%를 정률로 배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시보·가상광고 외에도 중간광고·CM지정·PCM 등 매출배분 대상 광고를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별 총매출의 일정률을 최소 보장하고, 매출총액 매출목표(97%) 미달 시 재협의하는 요구 조항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민방은 자사 로컬광고시장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SBS M&C는 전국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와 OBS의 변경사항입니다. 재허가 심사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은 2021년부터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매출 평균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SBS와 지역민방 간 매출평균 최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네트워크 합의서가 개정됨에 따라 SBS에 대한 지원 방식 변경도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후 결합판매는 방통위 고시에 따르고, 비결합판매의 경우 OBS의 시장개발 공동노력에 따른 성과를 비결합판매 실적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로 전파력 배분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 매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지역방송의 자체 광고 판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간광고 등 판매금액 추가 등에 따라 SBS 매출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민방에 배분되는 매출은 기존 합의서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OBS의 경우도 로컬광고 개발 시 비결합판매 매출로 귀속하기로 함에 따라 OBS 전체 광고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SBS M&C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용이 지역·중소방송에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이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SBS M&C 재허가 조건 변경 내용입니다. 광고합의서 갱신으로 지역민방 및 OBS에 대한 광고매출 지원비율 기준 산식은 적용이 어려우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체 광고 판매 지원 비율이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한 사항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SBS M&C가 신청한 변경신청 관련 승인사항을 통보하고 허가증의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재교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무엇보다 SBS와 지역민방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전파료와 관련하여 그간 SBS M&C는 초당 정액제를 원칙으로 광고수익을 배분했습니다. SBS의 광고 수익이 많건 적건 간에 지역민방이 받는 단가가 일정하다 보니 전파료 배분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배분기준이 광고 효과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비결합판매 로컬판매 부분입니다. 최근 로컬광고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민방들에게 적용되는 최소 보장 매출 금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컬광고 판매금액 최소 보장 제도의 실효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폐지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OBS와 관련하여 OBS가 로컬광고를 개발하면 그것을 SBS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OBS의 결합판매 실적이 아니라 비결합판매 실적에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OBS의 영업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역민방이 어려운 상황인데 SBS의 양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SBS M&C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계획 변경 신청내용이 지역·중소방송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극제가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무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SBS와 지역민방 그리고 SBS와 OBS 간 상호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광고매출 배분기준을 도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의 검토결과도 지역·중소방송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2022-58-201 ~ 22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 “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 의견청취 이전에 보고된 내용을 다시 보고할 필요는 없고 결과 위주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방송시장조사과장

-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11월 2일 위원회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해서 기초사실과 행위사실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3개 방송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고자료 20쪽 <6>번 위법성 판단부터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6> 위법성 판단입니다. <가> 관련법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는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에서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여부 관련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제3자 제공 여부입니다. 피심인 ⑬, ⑭, ⑯, ⑰은 보험 방송방송기간 중 해당 프로그램 작가를 통하여 상담접수를 진행하였고,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 피심인은 자신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자막으로 자사 개설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진행자 멘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유인하고,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화를 협찬사 등에 착신전환하여 이들 소속 상담원이 전화 응대를 하게 하였으며, 상담원은 방송사명 및 프로그램명으로 상담센터를 소개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온전한 동의 없이 시청자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이 직접 수집하든 또는 (주)세일코리아넷을 통하여 시청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피심인의 착신전환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심인이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 등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결입니다.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청자 상담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자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설명·동의 없이 법인보험대리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피심인 ①~⑫, ⑮, ⑰, ⑱, ⑳의 행위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 [별표2의3.VI.1]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청자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헛되게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알차게 받을 수 있는 보험정보를 안내하는 좋은 취지를 내세우고 상업적 목적이 배제된 것으로 표방하였지만, 본 건 보험방송이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보험영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작·편성·송출 및 마케팅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심인 16개사 모두 공통됩니다. 하단입니다. 피심인 ①~⑫, ⑰, ⑱, ⑳에서 자신의 착신전환으로 방송에서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개인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이 직접 수집하게 하거나 (주)세일코리아넷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되게 하였으며, 피심인⑮는 착신전환 하지 않았으나 시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5개 법인보험대리점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청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부 피심인은 협찬계약 내용에 “상담DB 확보”, “상담자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같은 명시적인 계약조건이 있으며,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상담을 유인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상담 응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가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보험방송에 대한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보험영업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혹은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방송사와 시청자 간에는 일반적인 기대수준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방송사가 그 수준을 벗어나 시청자 상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방송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 사례를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목적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상담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사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협찬사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 등이 시청자 상담정보를 수집하도록 조치하고 대가를 수수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시청자 정보의 활용이며, 시청자가 상담 중에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를 받을 수 있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청자정보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소결입니다. 협찬사 및 협찬사와 관련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목적에 필요한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편성·송출 또는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협찬금을 지급받은 피심인①~⑫, ⑮, ⑰, ⑲, ⑳의 행위는 방송사에 상담전화를 하면 방송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보험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3조의5에 의한 [별표2의3.VI.2]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8>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가> 시정조치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①~⑫, ⑮, ⑰, ⑲, ⑳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는 안입니다.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1개월 이내), 업무처리 절차개선(3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이행완료 후 10일 이내)를 명하는 안입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과근거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의 VI.1과 2를 위반한 피심인①~⑫, ⑮, ⑰, ⑲, ⑳의 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관련매출액은 보험방송 관련 협찬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해당 보험방송에 송출된 광고매출액, 보험상담 프로그램 판매 금액을 합산합니다. 피심인들의 보험방송 관련 매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하단입니다. 부과기준을 및 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청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만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피심인 전체에 대해 부과기준율 1.2%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필수적 조정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기간을 보험방송을 송출한 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한 날까지로 하며, 그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에서 20~50%를 가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추가적 조정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심인⑪을 제외한 15개 피심인 모두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20% 추가적으로 감경하고, 위원회 의견진술 과정에서 피심인⑪은 행위사실의 부정 등 조사 착수 전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에 최종 과징금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추가적 조정을 거친 결과, 피심인①~⑫, ⑮, ⑰, ⑱, ⑳에 대해 각각 60만원~2,250만원까지 총 1억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개선권고입니다. 피심인⑬, ⑭, ⑯, ⑰은 시청자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 통보를 이달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피심인①~⑫, ⑮, ⑰, ⑱, ⑳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와 피심인⑬, ⑭, ⑯, ⑰에 대한 권고(안)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금번 조사결과, 16개 방송사가 방송 제공 과정 중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니 진행자가 방송 중 방송사가 직접 보험상담을 하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 '저희 전문요원', '방송 후에도 상담전화가 계속 열려 있다'와 같은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대개 방송은 광고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신뢰감을 갖고 보험상담을 신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시청자 정보가 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된 것입니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징금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방송들이 중단된 점과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사무처 의견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필수적·추가적 가중 요소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일부 피심인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았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와 관련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는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시청자 정보가 광고영업 등에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피심인의 의견대로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않았고 시청자 정보가 어떻게 유용되었는지도 몰랐으니 문제도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피심인들에게는 시청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시청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피심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시청자는 방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개인정보를 시청자들의 동의도 없이 방송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것을 대가로 받는 것은 방송사의 공적책임 혹은 공신력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사무처 조사결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사안이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이 2020년 10월 7일 미디어오늘 보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태점검이 2021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실태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거의 2년 남짓 소비되는 이 긴 과정 속에서 타 방송사가 이런 유사 방송을 확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또 유사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계속 방영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조치가 아무리 대상이 넓고 광대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내용 전체는 사무처에 동의하지만 행정의 신속성 그리고 방송의 이런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능력 대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인지된 상황을 가지고 시정 조치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을 내리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만약에 국정감사를 통하지 않거나 언론을 통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소위 방송사들이 시청자에게 재테크와 무료상담을 미끼로 한 영업이익을 제공하고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잘못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한 방송사 한국경제 TV가 지난 의견진술에서 사무처의 그동안의 보고와 문제가 된 점에 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의견진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들이 해당 방송사와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로부터 보고가 됐고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점들이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사무처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방송사업자들을 보면 종편·지역민방·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다양합니다. 또 이런 위법행위가 다수 방송사업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시청자들의 권익보호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방송은 그 자체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게 되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시청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이 시청자들로부터 획득한 신뢰를 허무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방송 본연의 기능 그리고 공적책임에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조치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 및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52개 방송사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 총 458건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행 445개, 미이행 13건으로 이행률 97.2%로 나타났습니다. <다> 주요 조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대상 방송사 모두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제출하고,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 고용조건 개선 등 방송사 자체 처우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조건의 경우 지상파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한 방송사 차원의 최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비정규직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이 기대됩니다. 2)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 최소 투자비율 준수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지역MBC 9% 이상, 지역민방 11% 이상 제작비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와 자체 제작 및 편성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지역방송사는 방송환경 변화, 경영위기

해소, 지역문화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동 제작비 투자비율 조건을 '전체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 요소별' 기준으로 변경하고, 2022년까지 유예되는 제작비율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지역방송사 경영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입니다. 지역민방과 지역MBC 모두 사외이사, 감사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및 감사제도를 강화하여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건은 지역방송사 경영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 지역민방 공정성 보장 관련입니다. 최대주주 관련 방송현황을 제출하는 조건이며, 최대주주 관련 보도는 지역 장학금 전달 행사, 주주총회 결과, 최대주주가 속한 지역단체의 행사 등의 보도였습니다. 동 조건 부과 이후 지역민방 최대주주 홍보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방송사별 일관된 자료제출 기준을 위해 프로그램의 제목·자막·내용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일체를 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재허가 조건 미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협찬 시 고지 누락 관련입니다. 협찬을 받을 경우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건입니다. 점검결과, 협찬 시 3회 고지 관련 KBS 1건, MBC 5건, SBS 1건을 위반하였으며, 7일 이내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하여 KBS 4건, MBC 13건, SBS 25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동 조건 위반 시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협찬상품 등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며,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명령 부과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국 자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미달 관련입니다. KBS경인제1DTV와 OBS경인TV의 경우 자체 편성 계획에 대한 이행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KBS경인제1DTV는 계획 대비 96.6%, OBS는 79.3%를 이행하였습니다. KBS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 1개월 순연되어 미달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OBS의 경우 자체 계획에는 미달하였으나, 타 지역민방과 달리 수중계 편성 없이 자체 편성으로 방송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될 수 있는 보험, 부동산 방송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UHD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관련입니다. MBC의 경우 2021년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446억원을 미투자한 사항으로 2022년 4월 MBC UHD 콘텐츠 투자 계획 변경 시 동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에 미이행 금액을 추가 투자하도록 시정명령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송전문경영인 미선임 관련입니다. 지역민방에 대해 방송전문경영인, 사외이사 위촉 등의 조건으로 점검결과 TBC의 경우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미이행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최근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등기 완료 후 11월 8일에 대표자 신고를 완료하여 미이행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광주방송의 경우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이후,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 자진 사임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미선임되어 시정명령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OBS경인TV 사옥이전 계획 지연 관련입니다. 점검결과, 인천시의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일정이 당초 2021년 4분기에서 2023년 4분기로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는 2020년 재허가 조건 이행 실적 점검 시 작년에 2023년 2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어 이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건의 경우에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옥이전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DMB 관련 조건입니다. 지상파 DMB 연구개발 및 방송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SBS와 TBC가 일부 실적이 미달하였고, DMB

음영지역 해소와 관련하여 TBC와 안동MBC가 방송수신환경조사를 미 실시한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차질 없이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 SBS 최다액출자자 (주)티와이홀딩스 변경승인 관련입니다. 조건은 SBS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발전계획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SBS와 (주)티와이홀딩스는 SBS 미래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미래발전계획은 SBS가 제작사 M&A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고, SBS의 안정적인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 배당원칙을 유지하며, 제작사 인수 등 SBS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소유-경영 분리 준수, 방송전문경영인을 통한 SBS 책임경영 강화, 회사 정관에 반영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침 준수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건의 경우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으나 (주)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매년 제출 요청하고, SBS에도 미래발전계획 관련 실적 제출을 요청하여 미래발전계획 관련 재허가조건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요 권고사항 준수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총 50개 방송사에 322건의 권고사항이 부가되었으며, 연도별 점검이 가능하고 2020년 이행실적 점검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67건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권고사항 점검 결과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준수되고 있으며, 과도한 배당 지양 및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배당방안 강구 관련 권고사항의 경우 지역민방인 제주 방송의 경우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하여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지도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 1DTV 지역국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입니다. 부산, 대구 등 지역총국의 경우 일부 계획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진주, 안동, 목포 등 지역방송국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낮아 지역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HD 프로그램 편성 관련입니다. KBS, SBS는 보도·교양·오락 분야 균형있게 UHD 콘텐츠를 편성 중이나, MBC는 보도분야 UHD콘텐츠 편성비율이 저조하여 행정지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 방안입니다. 위 검토한 보고와 같이 협찬고지 조건 위반과 관련하여 KBS, MBC, SBS에 대해 시정명령, 자체 프로그램 편성 미달과 관련되어 OBS, KBS에 대해 행정지도, UHD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과 관련하여 MBC에 대해 시정명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외이사를 미선임한 광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사옥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OBS에 대해 행정지도, DMB 연구개발 및 음영계획 조건과 관련하여 SBS, TBC, 안동MBC에 대해 행정지도를 검토하였으며, 권고사항 미준수와 관련해서 100% 배당을 실시한 제주방송, KBS 지역국 자체제작 편성이 미달된 KBS, UHD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관련하여 MBC를 통해 행정지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보고가 접수되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상파 52개 방송사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이용률은 97.2%로 지표상

높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상파 3사의 집행률은 90% 내외이며,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KBS가 90.5%이고, MBC가 83.3%, SBS가 94.7%입니다. 주요 미이행 내역을 보면 3사 모두 협찬 시 협찬받은 사실 3회 고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찬고지 위반 시 협찬상품에 대한 오인으로 시청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찬 시 3회 고지 위반은 MBC가 5건, 협찬상품명 7일 이내 게시 위반은 SBS가 25건으로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실무자의 판단 착오에 의한 과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당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와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은 MBC UHD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입니다. MBC는 '21년도에 당초 투자 계획 대비 446억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0년에 이어 2년 연속 투자계획 미이행입니다. 당초 콘텐츠 투자계획 1,393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946억원으로 이행률도 67.9%에 불과합니다. 계획 준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년 미이행 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을 했고 향후 시정명령이 미이행될 경우 과징금 등 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21년도 미집행 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021년도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협찬고지 부분에 있어서 KBS, MBC, SBS, JTBC, MBN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투자 부분에서 채널A나 MBC 등 여러 방송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들 미이행 조건들이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사무처에서 이행 실적 점검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급격한 방송 환경 변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사업자들이 부가된 허가조건을 대다수 이행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허가 조건과 함께 공적책무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방송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정책 효과가 지속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찬고지 누락이나 UHD 콘텐츠 투자 등 일부 미이행 재허가 조건의 경우도 해당 방송사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이행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2021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2021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21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와 주요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종편·보도PP 6개사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 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분야 중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계획 준수 부분입니다. 방송사업자 종편PP 4개사와 YTN 대상으로 조건의 주요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점검별로 위 조건에 대해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는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TV조선은 '20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한 객관성 제고, 시청자 참여 구현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었으며, YTN는 일부 프로그램 편성 계획 이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외 이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심의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등의 유지 조건입니다. 방송사업자 종편PP 4개사 대상이었으며, 조건의 주요내용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해당 선거별로 2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관련 법정제재는 각 사별로 5건 이하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조건입니다. 방송사업자 종편PP 4개사를 대상으로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성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4개사 모두 방송관련 학회의 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22년에는 각 방송사는 진단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사의 일부 대표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각 사별 연구과제명과 연구기관 주요 연구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보도 관련 내부 검증절차, 교육제도 보완 및 실시 조건입니다. 조건 대상

사업자는 채널A였습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개선 및 기자준칙 등 임직원 내부교육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점검결과, 취재윤리-멘토링 에디터 제도 도입, 검찰출입제도 개선TF 운영, 취재 단계 게이트 키퍼 강화, 취재윤리 관련 임직원 분기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취재윤리 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관련 징계규정 강화 조건입니다. 조건 대상 사업자는 채널A였습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윤리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 등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점검결과, 기자 윤리규칙을 제정하고 해당 윤리규칙을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상별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한 추가개선계획 준수입니다. 대상은 MBN이었습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외주상생 강화 방안 등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점검결과, 각 방안별 제시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공정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보도국장 신입투표제, 팩트체크넷 참여, 노사동수 시청자위원회, 공정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투명성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상생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MBN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MBN 외주상생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청자위원회 추천 포함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대상 방송사업자는 MBN이었습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이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점검결과,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아울러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의 정책효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들의 이행을 위해 각 방송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 자체 검증절차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제·개정하였으며, 전문가를 활용한 내부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종편PP의 방송심의 법정제재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심의 법정제재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정리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야인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조건인 협찬주의 상품·용역에 관한 협찬사실 고지입니다. 종편 PP 4개사를 대상으로 조건이 나갔습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과를 다루는 경우 협찬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조건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와 사업자 제출 실적 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방통위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JTBC, MBN 등 일부 사업자의 미이행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21년 월별 이행실적 점검결과, JTBC가 1월 중 미고지 1건, MBN이 5월~7월 중 미고지 1건, 고지 횟수위반 5건으로

재승인 조건 위반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위반 건은 '20년 채널A의 10월~11월 중 미고지 2건과 함께 '21년 11월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21년 대상으로 한 점검과 협찬고지 점검은 방통위 자체적으로 매월 하고 있어서 참고로 '22년 현재까지 협찬고지 위반 현황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편성위원회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조건입니다. 조건 대상은 TV조선이었습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편성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성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 편성위원회 논의사항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점검결과, TV조선의 편성위원회는 책임자와 실무자를 동수로 구성하여 방송편성 등과 관련된 사항 등 편성위원회 취지에 맞는 안건을 위주로 논의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장르별 다양성 및 편성의 균형성 제고입니다. 조건 대상 방송사업자는 MBN입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장르별 및 편성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편성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고 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 편성위원회 개최 시 장르 다양성 및 편성 균형을 점검하고 향후 편성방향에 반영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등 해당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조건의 정책효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관련 조건들의 이행을 통해 각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협찬사실을 고지하고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PP의 협찬고지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 현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분야입니다. 열한 번째로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조건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종편PP 4개사업자입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투자금액 인상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자가 미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실적을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종편PP 2개사는 '21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JTBC는 '20년도, '21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채널A는 '21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최대주주 소속 기자 파견해소 계획 제출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JTBC입니다. 조건의 주요내용은 최대주주 소속 기자의 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21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점검결과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특이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열세 번째 연합뉴스 광고영업 대행 축소방안 준수도 점검결과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최대주주와의 내부거래 금지, MBN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도 점검결과 내용도 조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방안으로 MBN을 대상으로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부분도 점검결과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본금 증가방안 마련 및 이행도 현재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소송 중으로 조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관련 조건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종편PP 각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계획 및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발전 지원계획입니다. 외주제작 관련 위원회 기준 준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MBN에 대해서 최대주주 관련법령 준수 이행각서 제출 건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 관련 조건의 정책효과는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먼저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채널A, JTBC는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간부임명 시 종사자의견반영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연도별 균형 있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제작,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과 같은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은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이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연합뉴스TV의 신임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 겸직금지 및 직원파견 해소 권고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그래픽 콘텐츠 사고예방 및 탐사보도 장르 프로그램 기획·제작 등 권고사항은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 방안입니다. 재승인 조건에 따라 계획한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 투자를 준수하지 못한 채널A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TV조선, 채널A, JTBC 및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2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주시면 11월 중 조건 미이행 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권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 권고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작년 한 해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계획이 대부분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내로 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 점검결과는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채널A, MBN, JTBC는 1건도 법정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TV조선만 2건을 받았습니다. 2건을 받았기 때문에 5건 이내로 하라는 조건은 이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TV조선은 다른 경쟁사가 1건도 받지 않은 법정제재를 2건이나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능·효과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협찬사실 고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MBN의 위반건수가 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MBN 측의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계획 준수 관련입니다. 채널A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440억원이었는데 1,269억원 정도만 투자했습니다. 작년 채널A의 전체 방송사업매출액이 2,017억원으로 직전

'20년에 비해 매출이 328억원이나 증가하였음에도 콘텐츠 투자는 미진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대해 채널A의 소명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점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채널A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건을 줄 때 '윤리 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 등 내부규정을 제정할 것' 이렇게 해서 내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라고 조건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규정들을 제정하고 개편해서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있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징계위원회에서 적용돼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동안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확인했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징계위원회가 몇 차례 개최됐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건수가 한 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수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개최횟수가 몇 회 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기자들의 윤리규칙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취재보도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말하자면 기자들이 이런 내부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 KBS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여는 식으로 강화했는데 채널A는 그것이 없으니까 잘 되고 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 자체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 조건의 주요내용이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어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회의가 몇 차례 열렸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규정은 개정을 잘하고 강화를 잘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 취재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취재나 보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작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만 강화해 놓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너무 자구에만 충실한 것이 아닐까 해서 내용을 한번 점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합편성채널과 관련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공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볼 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분석해,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충실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진단 범위 내에서 전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널A가 콘텐츠 투자계획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11월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앞서 지상파방송사의 이행점검 결과처럼 다수 종편·보도PP 사업자 또한 재승인 조건을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미이행 건에 대해서도 사무처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 이행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 역시 원안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전 안건과 이 안건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리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이행실적 점검을 계기로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건이고 권고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점검결과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 이행에 보탬이 되는 행정지도였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방송사업자들이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관련 의견청취 (비공개)

9.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